

효창공원앞(효창동) 및 서울역(청파동) 역세권 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구 효창동 5-307번지 일대 효창공원앞(효창동)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청파동 46번지 일대 서울역(청파동)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4월 18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가.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

구 분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용산구 효창동 5-307번지 일대	90,332.0	
	용산구 청파동 46번지 일대	16,464.3	

나. 제한 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

다. 제한 사유

-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

라. 제한 기간

- 당초 : 2025년 4월 25일까지
- 변경 : 2027년 4월 25일까지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)

마.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

-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-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
-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용도변경
-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의한 집합건축물로 전환
- 토지의 분할
- 기타 토지등소유자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

바. 제한 적용 예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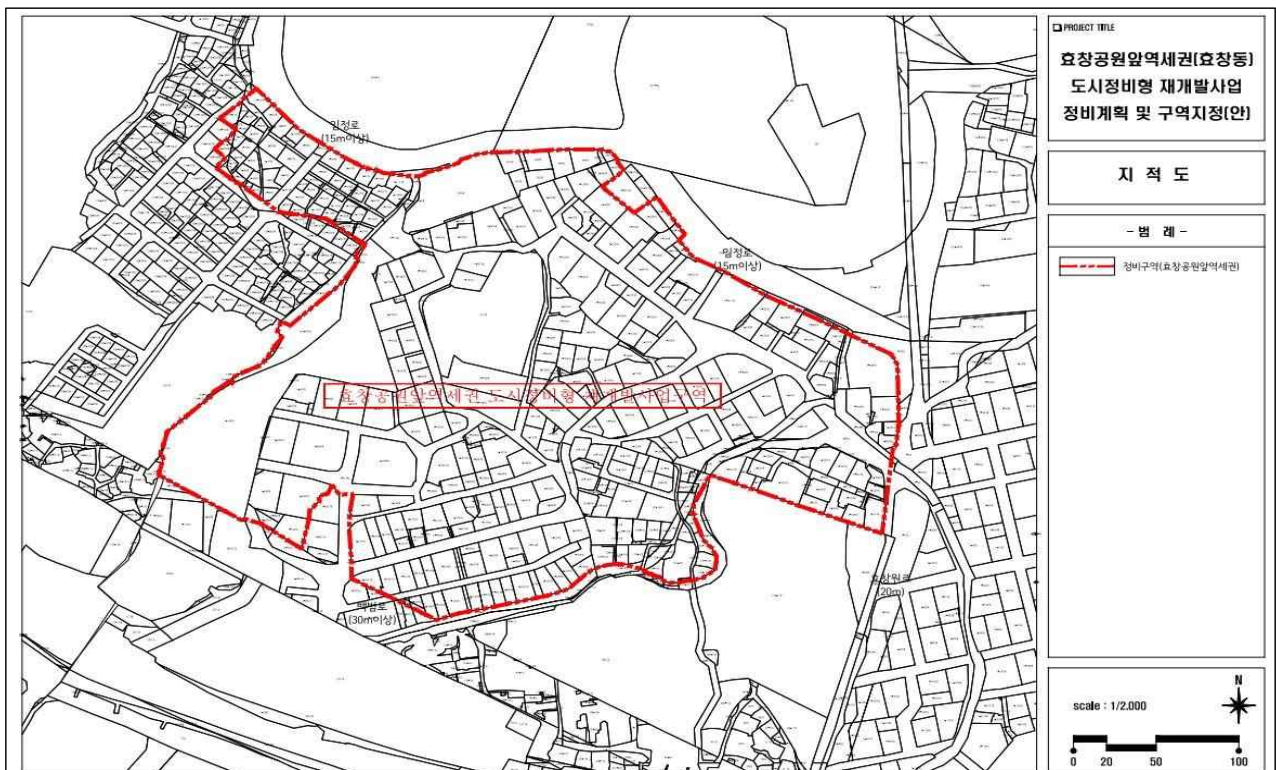
- 기 건축허가(신고) 등 행정청의 허가(신고)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
사. 관련도서 : 생략(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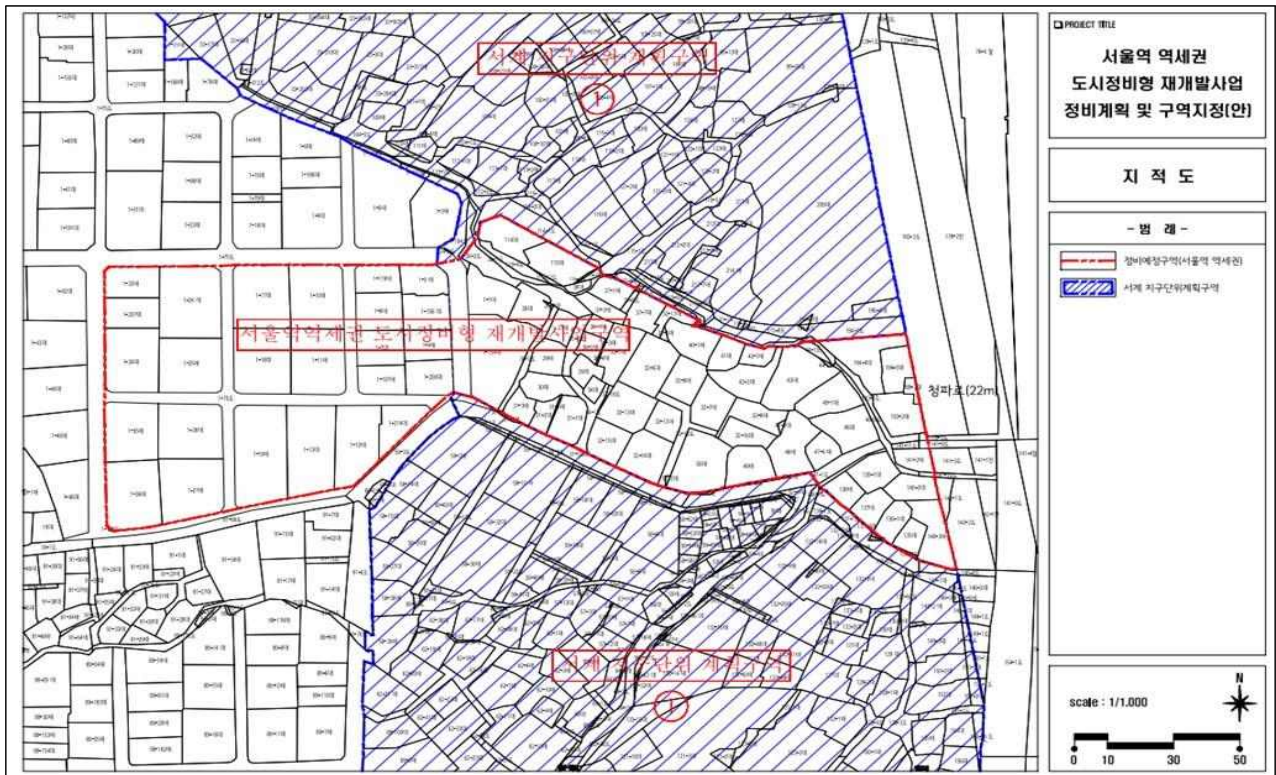
아.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5)로 문의
하시기 바람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☐ 지형도면(효창동)



□ 지형도면(청파동)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